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09
----------	------

2021년 5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4월 2일 김경우 의원 대표 발의
2.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3. 상정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경우 의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재단의 결산서류 제출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규정함 (안제16조제3항)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안제16조제4항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조례안의 개요

- 개정안은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의 결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종료 2개월로 앞당기려는 내용임.
- 또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주요사항 검토

##### 가. 결산서 제출 기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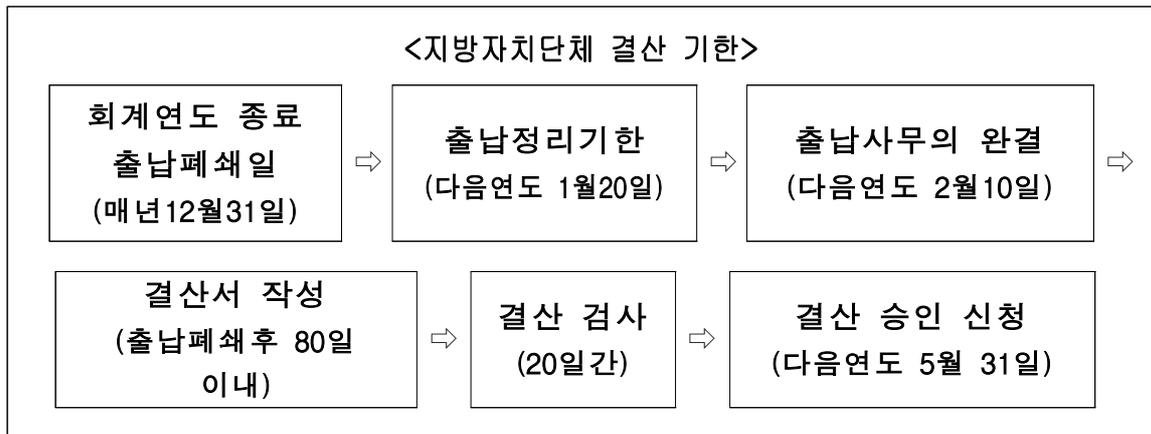
- 개정안은 현행 재단의 결산서 제출기한이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였던 것을 2개월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sup>1)</sup>를 반영하려는 것임.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부칙 제5조(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15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② (생략)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u>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u> 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15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u> ----- ----- 1. 2. (현행과 같음)

- 현재 「지방회계법」 제7조<sup>2)</sup>에서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고, 출납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의 결산 승인 신청은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동 개정안에 따라 재단의 결산서 작성 기한을 기존의 3개월에서 2

2)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생략)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의 결산 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타당하다 할 것임.

#### 나.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의무

-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을 총괄하는 조례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sup>3)</sup>에서 이미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해당내용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조례에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3 종합 의견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결산서 작성 기한을 기존의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결산 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서울시의 출자·출연 기관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을 위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적합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3)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 ①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자·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309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4월 02일  
발 의 자 : 김경우, 경만선, 권수정,  
권영희, 김경영, 김용석,  
김제리, 김화숙, 박기재,  
서윤기, 신정호, 이상훈,  
이영실, 이정인, 이준형,  
이호대, 임종국, 장인홍,  
조상호, 채유미 의원(20  
명)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재단의 결산서류 제출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규정함 (안제16조제3항)

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안제16조  
제4항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연도가”를 “회계연도가”로, “3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② (생략)</p> <p>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u>사업연도가</u> 끝난 후 <u>3개월</u>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u>&lt;신 설&gt;</u></p>	<p>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회계연도가</u> ----- <u>2개월</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